

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윤석열 인

2023년 8월 30일

국무총리 한덕수

국무위원 이상민  
행정안전부장  
(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)

● 법률 제19696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7조의6제1항 본문 중 “사람”을 “사람(제60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은 제외한다)”으로 한다.

제68조제1항 중 “소품”을 “소품(이하 “소품등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에 따른 어깨띠의 규격 또는”을 “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품등의 규격과”로 한다.

- ②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의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.

제82조의6을 삭제한다.

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180일”을 “120일”로 한다.

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選舉日전 180日”을 “선거일 전 120일”로 한다.

제103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단합대회 또는 야유회, 그 밖의”를 “단합대회·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”로 한다.

- ①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.

제255조제1항제5호 중 “제3항(어깨띠의 규격을 말한다)”을 “제3항(소품등의 규격을 말한다)”으로, “어깨띠, 모자나 옷, 표찰·수기·마스코트·소품,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”를 “소품등을 사용한”으로 한다.

제256조제3항제1호카목 중 “제3항”을 “제1항 및 제3항”으로 한다.

제261조제3항제4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6항제3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지방공사·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을 허용하고, 인터넷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제 규정을 삭제하여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이용자의 익명표현

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,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며,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하여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의 소형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·도화의 배부·게시 등의 금지기간을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한편,

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나 모임은 모두 금지하되,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의 경우 향우회·종친회·동창회·단합대회·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만을 한정적으로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함.

<법제처 제공>